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민옥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50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 이민옥 의원(1명)

찬 성 자: 김기덕, 김성준, 김지향,
박철성, 봉양순, 서준오,
신복자, 왕정순, 이영실,
임규호, 임만균, 임춘대,
장태용, 정준호, 최기찬,
최민규, 최재란, 홍국표
의원(18명)

1. 제안이유

- 일자리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 중인 일자리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지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일자리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9조의2)
- 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1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p>	<p>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 ----- <u>2028년 12월 31일</u>-----.</p>
<p>제18조(일자리 지원시설)① 생략 ② <u>시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창업 보육공간 지원,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u> 2. <u>창업 자금 및 전시·판매장 등 마케팅 지원</u> 3. <u>그 밖에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 	<p>제18조(일자리 지원시설)① 생략 ②삭제</p>

문서 번호

2023101600000040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이민욱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박지영 주무관

접수일 : 2023.10.16.

회신일 : 2022.10.17.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변경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126,000천원(연평균 25,2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연평균 25,2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4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4~2028년) 동안 발생
- 같은 조례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따라 일자리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최대 인원인 30명으로 구성한다고 전제
- 같은 조례 제10조 제2항제1호(서울시 일자리분야 과장급이상 공무원)와 제2항제2호(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제2항제5호(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에 따른 위원은 각 1명으로 하고 나머지 27명은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전제
- 같은 조례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3항에 따라 정기회는 2회, 임시회는 상하반기 연2회 개최하여 연간 총4회 개최한다고 전제
- 회의시 위원회 위원이 전원 참석한다고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126,000천원(연평균 25,200천원)

- 총비용 = 일자리위원회 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존속기한 변경 (제9조의2)		25,200	25,200	25,200	25,200	25,200	126,000
	소계(b)		25,200	25,200	25,200	25,200	25,200	126,000
□ 총 비용(b-a)			25,200	25,200	25,200	25,200	25,200	126,000

○ 일자리위원회 운영비 = 126,000천원

= 참석수당+업무추진경비

= 108,000천원+18,000천원

- 참석수당 = 108,000천원

= 수당단가×지급인원×연4회×5년

= 200천원×27명×4회×5년

※ 참석수당 단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

※ 지급인원 : 최대 구성인원 30명 중 서울시 일자리분야 과장급 이상 공무원, 서울
지방고용노동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시의원 각 1명을 제외한 27명만
계산

- 업무추진경비 = 18,000천원

= 경비단가×지급인원×연4회×5년

= 30천원×30명×4회×5년

※ 업무추진경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및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담 당 관
추계세제팀장
주 무 관

재정분석담당관

오희선

이정수

박지영

☎ 02-2180-7952

e-mail : 7magic7@seoul.go.kr